

2020년도 「아이돌봄 지원사업」 정부지원 유형 판정 기준 안내

□ 필요성

- 2020년 지침 개정,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적격여부 확인 및 정부지원 유형 점검

□ 정부지원 신청

- **(신청방법)**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포* (bokjiro.go.kr)를 통해 소득(재)판정 신청
 - * 맞벌이부부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 가정 중 직장건강보험가입자는 복지포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
- 기존 정부지원 가구('19.12.31. 이전 신청자)는 '19. 1. 31.까지 현 정부지원 유형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정부지원 유형 결정 (재판정)을 받지 않으면, **2. 1.부터 정부지원 중단**
- **(시간제)**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급여 개시
 - 기존 정부지원 가구('19.12.31. 이전 신청자)는 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일에 변경된 등급이 적용되며, 등급 변경시 기존 서비스 이용 신청은 반려되어 서비스 재신청 필요
 - 결정정보 전송일에 따라 이용자 유·불리가 달라지므로 사전 안내 필요

< (예시)소득판정 결정정보 전송 일에 따른 이용자 유·불리 >

구분	상세 설명
소득판정이 높아지는 경우 (예 : 가형->다형)	1.31.까지 가형으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, 판정정보가 늦게 전송 될수록 이용자에게 유리
소득판정이 낮아지는 경우 (예 : 라형->나형)	판정정보가 빨리 전송될수록 이용자에게 유리

- **(영아종일제)** 익월 1일 급여 개시
- 정부지원 변경 시(시간제↔영아종일제 / 양육수당, 보육료 등 영유아복지↔영아종일제) 익월 1일 급여 개시

○ 기타 유의사항

- 시간제·영아종일제 서비스 유형 안내 시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 및 정부지원시간의 정확한 안내 필요(참고 1)
- 정부 미지원 가정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가능
-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회원가입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 필요

○ 행정사항

- 읍·면·동 및 시·군·구 담당자는 정부지원 대상자가 처리시일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지원 유형 결정처리
 - ☞ 시·군·구 담당자는 반드시 '19. 1. 31.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·전송
- 관내 영아종일제 라형 이용자의 양육수당 등 타복지 급여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이용자 안내 철저